####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47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박정현·박홍근·서영교

이기헌 · 염태영 · 오세희

김문수・김남근・박 정

이용선 · 김남희 · 박주민

이워택 • 황정아 • 김용만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

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경찰공무원법」의 개정)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 단서 중 "제8조제2항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을 "제8조제2항제6호는"으로 한다.

제3조(「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3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을 "제33조제5호는"으로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도로교통법」의 개정)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5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7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9조(「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승강기 안전관리법」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재해구호법」의 개정)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호 단서 중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 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을 "제31조제5호는"으로 한다.

제15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행정사법」의 개정)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 경비업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	
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	결격사유)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u>아니한 자</u>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경찰공무원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	
로 임용될 수 없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27조(당연퇴직) 경찰공무원이	제27조(당연퇴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	
히 퇴직한다. 다만, 제8조제2항	<u>제8조제2항</u>
제4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제6호는
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	
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	
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8조제2항제6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 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 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만 해당한다.

•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4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lt;</u>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 국가공무원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자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9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경우. 다만, <u>제33조</u>	<u>제33</u>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조제5호는
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	
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	
<u>제5호는</u>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 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경화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경의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 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	<u>&lt;</u> 삭 제>
권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도로교통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
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b>命</b> ) 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99조	
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학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감이나 부학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으로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로교통에 관한 업무에 3년	2
이상 근무한 경력(관리직 경	
력만 해당한다)이 있는 사람	
또는 학원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학원등의 교육	
•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지 아니하는 사람
가. (생 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다. ~ 아. (생 략)
3.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 아.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7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	
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lt;</u> 삭 제>
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제6조(허가의 제한)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	
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	
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	<u>&lt;삭 제&gt;</u>
權)되지 아니한 사람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새마을금고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탈퇴 등) ① (생 략)	제10조(탈퇴 등) ① (현행과 같
	<u>♥</u>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2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u>&lt;</u>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사람	
3. ~ 18. (생 략)	3.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
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의 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	
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사휴)
에 해당하는 자는 제39조에 따	
른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	
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	제11조의2(결격사유)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재해구호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지방공무원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1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1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경우. 다만, <u>제31조</u>	<u>제31</u>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u> 조제5호는</u>
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	
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	
<u>제5호는</u> 「형법」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ㆍ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 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u> 삭 제>
아니한 자	
7.・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u>&lt;삭 제&gt;</u>
아니한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행정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6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	
정사가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u>&lt;삭 제&gt;</u>
되지 아니한 사람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